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4. 7. 김명섭의원 외 2인
나. 회부일자 : 2008. 4. 8.
다. 상정일자 : 2008. 4. 14.(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김명섭 의원)

1. 제안이유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를 규칙상 현실에 맞게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로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중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학)

- 의회의원은 개표결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받고 등록을 한후 임기가 개시됨으로서 의원의 신분과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현 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천시 의회 회의규칙상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소수 의견

“ 없 음 ”

6. 토론 요지

“ 없 음 ”

7. 심사 내용

“ 원 안 가 결 ”

8. 심사 결과

“ 원 안 가 결 ”

9. 심사보고 불임서류

1.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